



NABO 재정동향&이슈

NABO Fiscal Trends & Issues

CONTENTS

주요 재정지표

주요 재정동향&이슈 |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2024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 현황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시행

해외재정동향

| EU 재정준칙 개정 및
초과재정적자 시정절차(EDP)의 주요 내용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일본, 2025년도 예산안 요구기준 결정



NABO Fiscal Trends & Issues

재정동향&이슈

2024년 Vol. 2 통권 제25호

CONTENTS

주요 재정지표 / 3

총수입·총지출 / 4

재정수지 / 5

중앙정부 채무 / 6

주요 재정동향 & 이슈 / 9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 10

2024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 현황 / 15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시행 / 20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 24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28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 / 31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 결과 / 34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 38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 / 42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주요 관련 지침 개정 / 46

해외재정동향 / 49

EU 재정준칙 개정 및 초과재정적자

시정절차(EDP)의 주요 내용 / 50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 53

일본, 2025년도 예산안 요구기준 결정 / 56

주요 재정지표

- ▼ 총수입·총지출
- ▼ 재정수지
- ▼ 중앙정부 채무



총수입·총지출

2024년도 6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0.3조원 감소한 296.0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1.0%p 증가한 48.3%

- 총수입의 감소는 전년동기 대비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이 각각 1.1조원, 8.7조원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이 10.0조원 감소(법인세 △16.1조원, 소득세 +0.2조원, 부가세 +5.6조원 등)하였기 때문임

2024년도 6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0.3조원 증가한 371.9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1.6%p 증가한 56.6%

- 총지출의 증가는 전년동기 대비 재정의 신속집행(+7.8조원), 건강보험가입자지원(+3.2조), 기초연금 지급(+1.3조), 부모급여지급(+1.0조) 등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2023·2024 회계연도 총수입·총지출 실적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2024(잠정)				전년동기 대비	
	본예산 (A)	결산	6월 (누계, B)	진도율 (C=B/A)	본예산 (D)	6월 (당월)	6월 (누계, E)	진도율 (F=E/D)	누계 (E-B)	진도율 (F-C)
◆ 총수입	625.7	573.9	296.2	47.3	612.2	37.8	296.0	48.3	△0.3	1.0
· 국세수입	400.5	344.1	178.5	44.6	367.3	17.5	168.6	45.9	△10.0	1.3
· 세외수입	25.0	28.5	15.4	61.7	28.2	2.6	16.5	58.4	1.1	△3.3
· 기금수입	200.3	201.1	102.2	51.0	216.7	17.6	110.9	51.2	8.7	0.1
(사회보장성기금) ¹⁾	114.6	122.3	64.2	56.0	123.8	11.5	66.2	53.5	2.0	△2.6
· 세입세출외	-	0.3	0.1	-	-	0.1	0.1	-	△0.0	-
◆ 총지출	638.7	610.7	351.7	55.1	656.6	61.6	371.9	56.6	20.3	1.6
· 예산	441.1	413.1	246.0	55.8	438.3	43.1	262.1	59.8	16.1	4.0
- 일반회계	369.4	343.5	198.9	53.9	356.5	33.1	206.8	58.0	7.9	4.2
- 특별회계	71.6	69.6	47.1	65.7	81.7	10.1	55.3	67.6	8.2	2.0
· 기금	197.7	196.5	105.1	53.2	218.4	18.4	109.5	50.2	4.4	△3.0
(사회보장성기금) ¹⁾	69.5	72.0	36.7	52.8	76.6	6.4	38.8	50.6	2.1	△2.2
· 세입세출외	-	1.0	0.5	-	-	0.1	0.2	-	△0.3	-

주: 1)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4년 8월호(2024. 8.)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수지

2024년도 6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6.0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20.5조원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103.4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20.4조원 증가

- 전년동기 대비 총수입은 0.3조원 감소하고, 총지출은 20.3조원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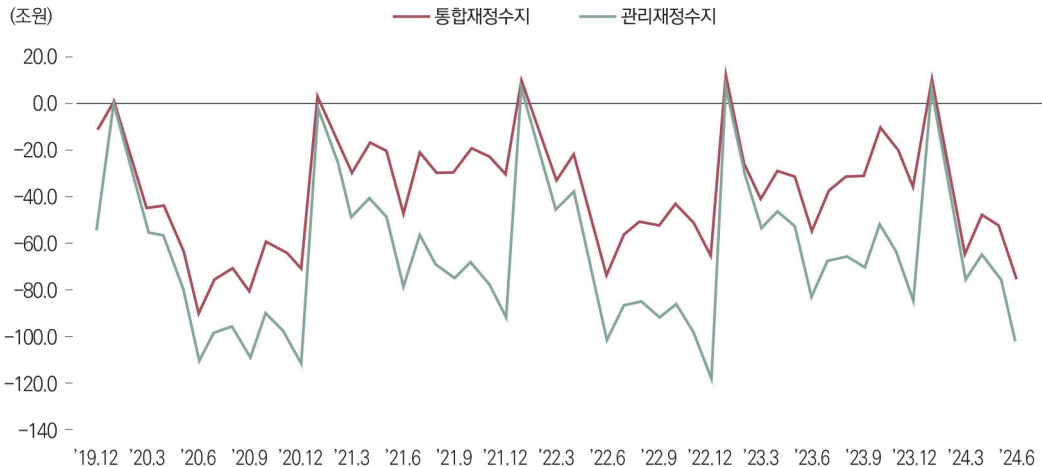
2023·2024 회계연도 재정수지 실적

(단위: 조원, %, %p)

구분	2023				2024(잠정)				전년동기 대비	
	본예산 (A)	결산	6월 (누계, B)	진도율 (C=B/A)	본예산 (D)	6월 (당월)	6월 (누계, E)	진도율 (F=E/D)	누계 (E-B)	진도율 (F-C)
◆ 총수입(A)	625.7	573.9	296.2	47.3	612.2	37.8	296.0	48.3	△0.3	1.0
◆ 총지출(B)	638.7	610.7	351.7	55.1	656.6	61.6	371.9	56.6	20.3	1.6
◆ 통합재정수지(C=A-B)	△13.1	△36.8	△55.4	-	△44.4	△23.8	△76.0	-	△20.5	-
◆ 사회보장성기금 수치(D)	45.1	50.3	27.5	-	47.2	5.2	27.4	-	△0.1	-
◆ 관리재정수지(E=C-D)	△58.2	△87.0	△83.0	-	△91.6	△29.0	△103.4	-	△20.4	-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4년 8월호(2024. 8.)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4년 8월호(2024. 8.)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중앙정부 채무

2024년도 6월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1,145.9조원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1,092.5조원 대비 53.4조원 증가

- 전년 결산 대비 국채가 53.4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민주택채권 및 외평채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고채권이 전년 결산 대비 54.9조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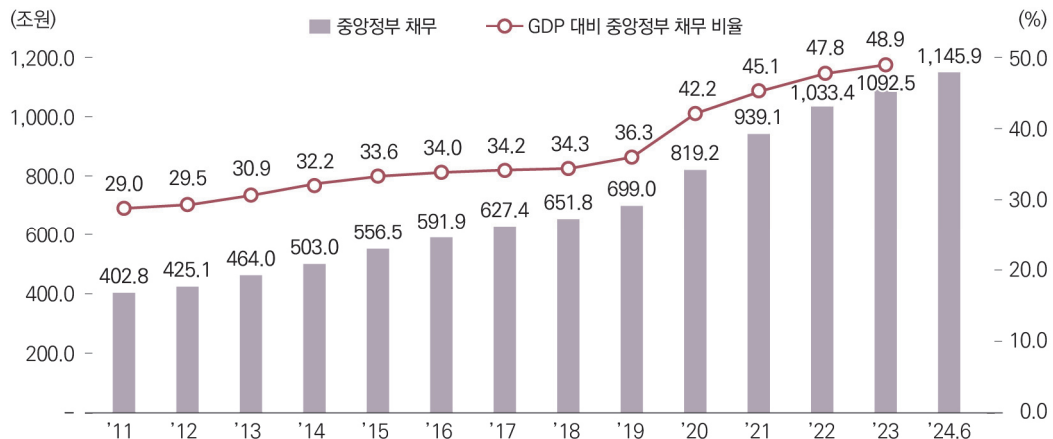
2022~2024년도 중앙정부 채무

(단위: 조원)

구분	2022	2023	2024(잠정)		
	결산	결산(A)	본예산	6월(B)	전년 결산 대비(B-A)
◆ 중앙정부 채무	1,033.4	1,092.5	1,163.0	1,145.9	53.4
• 국채	1,031.5	1,091.1	1,161.7	1,144.5	53.4
- 국고채권	937.5	998.0	1,046.0	1,052.9	54.9
- 국민주택채권	82.2	81.6	83.7	81.2	△0.4
- 외평채권(외화)	11.8	11.5	32.0	10.4	△1.1
• 차입금	1.9	1.2	1.2	1.2	-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2	0.2	0.2	-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4년 8월호(2024. 8.)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중앙정부 채무 추이



주. 2023년 GDP는 미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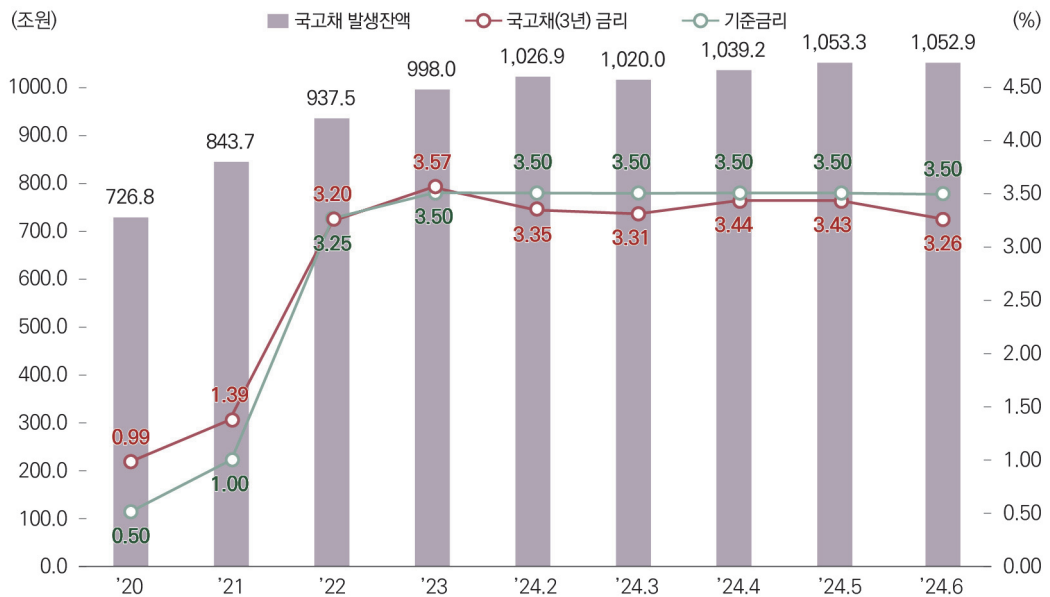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6월말 기준 국고채 발행잔액 규모는 1,052.9조원으로, 2023년말 998조원 대비 54.9조원 증가

- 국고채 금리(3년 만기 기준)는 2020년 최하점(0.99%)을 기록한 후 2023년 10월 기준 4.03%까지 상승하였으나,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2024년 6월 기준 3.26% 수준으로 하락
- 기준금리는 2020년 기준 0.50%로 최하점을 기록하였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2023년도 1월까지 3.50%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함에 따라 2024년 8월 현재까지 3.50%로 동결 유지

국고채 발행잔액, 국고채(3년) 금리 및 기준금리 변동 추이



주: 1. 국고채 발행잔액은 국고채 총 발행액 중 총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간별 순발행 금액의 누적 합계를 의미함

2. 국고채 금리 및 기준금리는 해당 기간 중 평균금리를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재정동향 & 이슈

- ◆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 ◆ 2024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 현황
- ◆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시행
-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
- ◆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 결과
- ◆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
- ◆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주요 관련 지침 개정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정부는 총지출 기준 677.4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2024년 9월 2일 국회 제출

● 재정총량

- (총수입) 651.8조원(올해 대비 6.5% 증가)
 - 국세수입은 올해 대비 4.1% 증가한 382.4조원, 세외수입은 올해 대비 10.0% 증가한 269.4조원
- (총지출) 677.4조원(올해 대비 3.2% 증가)
 - 예산은 올해 대비 2.9% 증가한 450.9조원, 기금은 올해 대비 3.7% 증가한 226.5조원
- (통합재정수지) △25.6조원(올해 대비 18.8조원 개선)
 -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0%로, 올해 △1.8% 대비 0.8%p 개선
- (관리재정수지) △77.7조원(올해 대비 13.9조원 개선)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9%로, 올해 △3.6% 대비 0.7%p 개선되었으며, 정부의 재정준칙(안)¹⁾에 따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인 △3.0% 이하로 계획
- (국가채무) 1,277.0조원(올해 대비 81.3조원 증가)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올해 47.4% 대비 0.8%p 증가

2025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단위: 조원, %, %p)

구분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B-A)		
				증감	증감률	
재정 규모	총수입	573.9	612.2	651.8	39.6	6.5
	국세수입	344.1	367.3	382.4	15.1	4.1
	총지출	610.7	656.6	677.4	20.8	3.2
재정 수지	통합재정수지	△36.8	△44.4	△25.6	18.8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87.0	△91.6 (△3.6)	△77.7 (△2.9)	13.9 (0.7)	-
국가채무(D1) (GDP 대비 비율)		1,126.7 (46.9)	1,195.8 (47.4)	1,277.0 (48.3)	81.3 (0.8)	6.8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1)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을 △3.0% 이하로 제한하되,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을 △2.0% 이하로 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 ①국가재정을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집중 투자, ②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 추진, ③재정운용혁신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재정운용혁신은 ①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②다부처 공동 기획·편성·집행을 통한 복잡한 문제 해결, ③타당성·효과성 재점검을 통한 재정전반의 비효율 제거 측면에서 추진
-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투자목표 및 중점투자방향
 - 투자목표는 민생안정·역동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4대 중점투자방향으로 ①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②경제활력 확산, ③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④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외교를 제시

2025년도 예산안 4대 중점투자방향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 • 노인·장애인·취약아동 맞춤형 보호 •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 •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과 문화격차 해소
경제활력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 농어민 소득 확충 및 농수산물 물가 안정 • 선도형 R&D 개혁과 첨단산업 육성 • 수출모멘텀 확산과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양립·돌봄·주거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 필수의료 확충·지역의료 복원 •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 지원 • 인재·산업·교통 혁신으로 지방시대 뒷받침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유형·고강도 재해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 • 첨단·과학수사와 국민 권리구제 강화 • 군 자긍심 고취와 강한 군대 육성 • 전략적 외교·ODA로 국익 창출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른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 12대 분야 중 올해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R&D(11.8%)로, 2025년도 예산안은 29.7조원
 - R&D 분야 예산은 2023년 31.1조원에서 2024년 26.5조원으로 감소한 바 있음
 - 정부는 2024년도 R&D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OECD 권고기준상 R&D로 분류하지 않는 대학 일반지원 성격의 사업 등을 비R&D로 재분류하였으며, 상기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23년 R&D 분야 예산은 29.3조원 수준이라는 입장
- 12대 분야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249조원)으로, 올해 대비 증가율 역시 R&D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4.8%)
 - 증액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 등에 기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 급여는 월간 급여액 11.8만원(4인가구 기준 183.4→195.2만원), 연간 급여액 141만원(4인가구 기준 2,200→2,341만원) 인상
- 12대 분야 중 유일하게 감소한 분야는 SOC(26.4조원→25.5조원, △3.6%)이며, 도로·철도 부문 위주로 감소
 - 도로부문(2024년도 예산 7조 9,779억원→2025년도 예산안 7조 1,998억원)
 - 철도부문(2024년도 예산 8조 1,021억원→2025년도 예산안 7조 16억원)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B-A)	
			증감률	증감률
보건·복지·고용	237.6	249.0	11.4	4.8
교육	95.2	98.5	3.3	3.5
문화·체육·관광	8.7	8.8	0.1	1.3
환경	12.5	13.0	0.5	4.0
R&D	26.5	29.7	3.2	11.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0	28.3	0.3	1.1
SOC	26.4	25.5	△0.9	△3.6
농림·수산·식품	25.4	25.9	0.5	1.9
국방	59.4	61.6	2.2	3.6
외교·통일	7.5	7.8	0.3	3.7
공공질서·안전	24.4	25.1	0.7	2.6
일반·지방행정	110.5	111.3	0.8	0.6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총수입·총지출
 - 2024~2028년 연평균 증가율은 총수입 4.6%, 총지출 3.6%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대비 낮게 설정
 -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024년 612.2조원, 656.6조원에서 2028년 731.5조원, 756.2조원까지 증가
- 재정수지
 -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함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은 점진적으로 축소
 -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4년 △44.4조원에서 2028년 △24.7조원으로 개선
 -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4년 △91.6조원에서 2028년 △72.2조원으로 개선
- 국가채무
 - 국가채무는 2024년 1,195.8조원에서 2028년 1,512.0조원으로 증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 증가률	
재정 규모	총수입	'23~'27	625.7	612.1	661.5	692.0	722.3	-	3.7
		'24~'28	-	612.2	651.8	677.7	706.4	731.5	4.6
		변동	-	0.1	△9.7	△14.3	△15.9	-	-
	총지출	'23~'27	638.7	656.9	684.4	711.1	736.9	-	3.6
		'24~'28	-	656.6	677.4	704.2	730.3	756.2	3.6
		변동	-	△0.3	△7.0	△6.9	△6.6	-	-
재정 수지	통합 재정 수지	'23~'27	△13.1	△44.8	△22.9	△19.2	△14.6	-	-
		'24~'28	-	△44.4	△25.6	△26.6	△23.9	△24.7	-
		변동	-	0.4	△2.7	△7.4	△9.3	-	-
	관리 재정 수지	'23~'27	△58.2	△92.0	△72.2	△69.5	△65.8	-	-
		'24~'28	-	△91.6	△77.7	△75.8	△73.1	△72.2	-
		변동	-	0.4	△5.5	△6.3	△7.3	-	-
국가채무(D1)	'23~'27	1,134.4	1,196.2	1,273.3	1,346.7	1,417.6	-	5.7	
	'24~'28	-	1,195.8	1,277.0	1,353.9	1,432.5	1,512.0	6.0	
	변동	-	△0.4	3.7	7.2	14.9	-	-	

자료: 대한민국 정부, 각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25년도 총수입·총지출 규모는 각각 661.5조원, 684.4조원인 반면, 실제로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 총수입·총지출 규모는 이보다 소폭 감소한 651.8조원, 677.4조원 수준
 -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25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는 각각 Δ 72.2조원, 1,273.3조원인 반면, 실제로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각각 Δ 77.7조원, 1,277.0조원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절차
 - 국회는 정부의 시정연설 이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의 심의·의결 순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
 - 「국회법」 제85조의3²⁾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법정시한(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

최근 5년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단위: 조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총수입	증액	0.1	0.4	6.9	0.006	0.3
	감액	Δ 0.3	Δ 0.8	Δ 2.2	Δ 0.3	Δ 0.2
	순증	Δ 0.2	Δ 0.4	4.7	Δ 0.3	0.1
총지출	증액	7.9	8.1	8.9	13.5	4.5
	감액	Δ 9.1	Δ 5.9	Δ 5.6	Δ 13.8	Δ 4.7
	순증	Δ 1.2	2.2	3.3	Δ 0.3	Δ 0.2

자료: 국회, 각 연도별 예산안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제작됨

예산분석총괄과 이규민 예산분석관(02-6788-4625)

2)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 현황

2024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발표(2024. 7. 23.)

- 정부는 예산집행의 연말 집중 및 불용 과다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상저하교의 경제전망에 대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운영 중임
 - 재정 신속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제도로써, 제도 운영상 재정의 과반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의미
 - 재정 신속집행의 대상에는 각 부처, 지자체, 지방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며 기획재정부는 매월 관계기관과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실적을 점검·관리하고 있음
- 2024년에도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중앙재정 65%)의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비상경제장관회의, 2024.1.16.)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연간 계획	상반기 계획	
		금액	집행률
합 계	561.8	351.1	-
중앙재정	252.9	164.4	65.0
지방재정	282.5	169.5	60.0
지방교육재정	26.4	17.2	65.0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3회계연도 중앙부처 신속집행 추진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연간 집행계획 (A)	상반기 집행목표		상반기 집행실적		초과달성	
		금액(B)	집행률 (C=B/A)	금액(D)	집행률 (E=D/A)	금액(D-B)	집행률 (E-C)
2019	252.6	155.9	61.7	166.2	65.8	10.3	4.1
2020	261.4	164.6	63.0	175.6	67.2	11.0	4.2
2021	293.3	187.4	63.9	203.2	69.3	15.8	5.4
2022	199.4	125.6	63.0	128.3	64.4	2.7	1.4
2023	242.9	157.9	65.0	159.7	65.7	1.8	0.7

자료: 기획재정부

분야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22차례 개최하여 집행 애로사항을 점검·해소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년 대비 19.2조원 증가한 357.5조원을 신속집행하였다고 발표
 - 제도개선 사항: 선금지급 한도 확대(계약금액의 70%→100%), 입찰공고 단축(7→5일) 등
 - 중앙 167.5조원(66.2%), 지방 170.2조원(60.2%), 지방교육 19.8조원(74.9%)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2024년				2023년				전년 동기 대비(c-f)
	연간계획 (a)	상반기목표 (b)	집행액 (상반기,c)	집행률 (c/a)	연간계획 (d)	상반기목표 (e)	집행액 (상반기,f)	집행률 (f/d)	
재정	561.8	351.1	357.5	63.6	552.6	346.4	338.3	61.2	19.2
중앙	252.9	164.4	167.5	66.2	242.9	157.9	159.7	65.7	7.8
지방	282.5	169.5	170.2	60.2	283.6	171.5	160.5	56.6	9.7
지방교육	26.4	17.2	19.8	74.9	26.1	17.0	18.1	69.3	1.7

자료: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투자)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총 37.0조원 집행
 - (목표) 연간 총 63.5조원, 상반기 34.9조원(55.0%)으로 설정
 - (실적) 상반기 총 37.0조원으로 목표대비 +2.0조원 초과 달성(집행률 58.2%, 상반기 목표 달성률 105.8%)
 - ※ SOC(59.8%), 에너지·산업(57.6%) 분야에서 선금 지급, 투자시기 조정 등을 통해 상반기 신속투자 견인(전년대비 +2.2조원)

공공기관 투자 분야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조원, %)

분야	연간계획	상반기 목표(a)	집행액 (상반기, b)	집행률 (c=b/a)
합계	63.5	34.9	37.0	58.2
SOC	32.4	18.5	19.4	59.8
에너지·산업	24.2	13.1	13.9	57.6
주거복지	4.7	2.3	2.1	45.0
기타	2.2	1.1	1.5	69.6

자료: 기획재정부

- (민간투자)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총 2.8조원 집행
 - (목표) 연간 집행규모를 5년내 최고수준인 5.7조원(전년대비 +30%)으로 확대 후 상반기 목표를 2.7조원으로 설정



- (실적) 상반기 기준으로 총 2.8조원 집행(집행률 48.6%)

※ 국토부 1.8조원, 국방부 0.3조원, 서울시 0.2조원, 교육부 0.1조원, 부산시 0.1조원 등

민간투자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조원, %)

'24년				'23년				'24-'23
연간계획(a)	상반기 계획	상반기 실적(b)	집행률(b/a)	연간계획(c)	상반기 계획	상반기 실적(d)	집행률(d/c)	전년동기대비 (b-d)

자료: 기획재정부

- (중점 관리대상)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예산(109.5조원)은 상반기에 74.3조원을 집행
 - (약자복지) 노인 15.5조원, 저소득층 14.4조원, 청년 7.7조원, 기타 8.4조원 등 총 46.0조원 (집행률 66.3%) 집행
 - ※ 소상공인(3.8조원), 장애인(4.1조원), 다문화·한부모(0.4조원) 등 맞춤형 지원
 - (일자리 지원) 직접 일자리 2.8조원, 기타 일자리 7.5조원 등 총 10.3조원(69.3%) 집행(직접 일자리 채용인원 114.2만명* 완료)
 - ※ 노인일자리 101.9만명, 자활근로 5.1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8만명 등
 - (SOC 사업) 도로 5.3조원, 철도 5.8조원 등 총 17.9조원(71.4%) 집행
 - ※ 국토부(연간계획 19.8조원 중 상반기 14.4조원 집행, 집행률 72.9%)를 중심으로 투자 가속화

2024년 상반기 중점 관리대상 집행실적

(단위: 조원, %)

구분	예산현액 (a)	상반기 집행목표 (b)	상반기 집행실적			주요 사업내용
			집행액(c)	집행률(c/a)	진도율(c/b)	
합 계	109.5	71.4	74.3	67.9	104.0	-
약자복지	69.4	45.1	46.0	66.3	102.0	-
노인	22.8	-	15.5	68.1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건강관리 등
저소득층	20.3	-	14.4	70.9	-	생계급여,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청년	13.6	-	7.7	56.2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분양주택(용자) 등
기타	12.7	-	8.4	66.6	-	소상공인지원(용자), 발달장애인 지원 등

구분	예산현액 (a)	상반기 집행목표 (b)	상반기 집행실적			주요 사업내용
			집행액(c)	집행률(c/a)	진도율(c/b)	
일자리 지원	14.9	10.0	10.3	69.3	103.5	-
직접 일자리	3.5	-	2.8	80.4	-	노인일자리 및 자활근로, 산림재해일자리 등
(채용인원, 만명)	(117.7)	-	(114.2)	(97.1)	-	
기타 일자리	11.4	-	7.5	65.9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용자) 등
SOC 사업	25.1	16.3	17.9	71.4	109.8	-
도로	8.3	-	5.3	64.8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도로유지보수 등
철도	7.2	-	5.8	80.5	-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등
기타	9.6	-	6.8	70.3	-	도시재생사업, 국가하천정비 등

자료: 기획재정부

향후 계획

- 집행관리 우수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 (중앙부처)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회의 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우수 부처에게 2025년 기본경비 증액 등 예산상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2025년도 예산)
-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하반기 집행관리 지속
 - 약자복지·일자리 지원·SOC사업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 지속 관리(재정집행 점검 회의 수시 개최)
 - 특히, 연말 밀어내기식 집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 집행현황 점검, 집행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



추진 시 고려사항

- 재정의 신속집행 대상 비목 중 교부성 예산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출연금의 실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기대응 효과 측정이 어려운 측면
 - 특히, 철도, 도로 등 SOC 사업의 상당 부분이 출연·출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실제 사업수행기관의 실적행 실적을 관리할 필요
-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등 경제·재정 여건을 고려한 신속집행 제도 운영 필요
 - 2023년의 경우, 세수결손 상황에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규모와 이자비용이 과거 대비 증가하였고 올해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우려
 - 2024년 상반기 세수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10.0조원 감소한 가운데 하반기에 세수추세의 반전이 없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³⁾
 - 이와 같은 경제·재정 여건에 따른 비용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의 신속집행 제도를 운영할 필요

예산분석총괄과 유민호 예산분석관(02-6788-4687)

3)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 2024.8.26.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시행

정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 시행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의미(「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 부담금은 2023년 기준 91개 23.3조원 규모로 운용 중
 -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리 틀을 마련하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부담금운용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으나, 여전히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도 존속 중인 상황이었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제정 이후 2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장기존속 부담금 정비, 신설 심사 강화 등 제도혁신 필요성 제기

부담금 수 및 규모 추이

(단위: 개, 조원)

구 분	2001	2005	2010	2015	2020	2023
부담금 수	101	102	94	94	90	91
부담금 규모	7.1	11.4	14.5	19.1	20.2	23.3

자료: 기획재정부, 각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

- 정부는 2024년 3월 27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속조치를 시행 중
 - 이번 부담금 정비가준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의 정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정립된 정당화 요건,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 등에 따라 마련
 - ※ 정당화 요건: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상, 집단적 효용성
 -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후속조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음
 -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율 단계적 인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한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대상 확대 등
 - 일부 부담금 설치 및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건 발의 중(2024년 9월 기준)



-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
 - 연간 2.0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 경감
 - 그동안 부담금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90개 내외로 유지 중이던 부담금 수를 69개로 축소
-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에 집중
 -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실생활과 밀접함에도 그동안 국민들이 납부 사실조차 잘 몰랐던 부담금 중심 정비
 - 민간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도 정비하여 국민 부담 전가분 완화 유도

부담금 정비는 ①국민체감 부담 완화, ②기업 경제활동 촉진, ③기타 여건 변화 및 실효성 미흡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

- 국민체감 부담 완화: 8개 부담금
 - 국민들이 그동안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폐지 및 감면

국민 체감 부담 완화 부문 부담금 정비 내용

(단위: 억원)

부담금명('24년 계획)	정비방안	경감액 (연간 환산)	기대효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32,028억원)	단계적 요율 인하 (3.7→ ^{1년차} 3.2→ ^{2년차} 2.7%)	1년차△4,328 2년차△8,656	연 62만원(부리업종), 8,000원(4인 가구) 경감
출국납부금(410억원)	폐지(외교부)	△410	출국당 30,000원 경감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부부)
출국납부금(4,006억원)	납부액 인하(1→0.7만원) 및 면제대상 확대(2→12세 미만)	△1,344	영화 1회 관람시 약 500원 경감 (관람료 15,000원 기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294억원)	폐지	△294	복수여권 발급시 3,000원 경감
국제교류기여금(696억원)	복수여권(△3천원) 단수·여행증명서(면제)	△145	연 6,160원 경감 (4인 가구, '23년 월평균 도시가스 사용량 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17,524억원)	1년 한시 LNG 부담금 30% 수준 인하	△1,516	연 600원 경감 (차량 1대 기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348억원)	3년 한시 부과율 50% 인하	△174	영세 어민 부담 완화
수산자원조성금(8억원)	폐지	△8	

주: 연간 환산은 2024년 정수계획을 기준으로 정비에 따른 경감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
 자료: 관계부처 합동,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2024. 3. 27.

- 기업경제활동 촉진: 11개 부담금
 -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요금·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 폐지·감면

기업 경제활동 촉진 부문 부담금 정비 내용

(단위: 억원)

부담금명('24년 계획)	정비방안	경감액 (연간 환산)	기대효과
학교용지부담금(3,598억원)	폐지	△3,598	건설경기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 유도
개발부담금(4,756억원)	'24년 한시 감면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3,082	
환경개선부담금 (1,516억원)	영세 자영업자 소유 경유차 50% 인하	△133	부담 형평성을 감안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폐기물처리부담금 (1,561억원)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600→1,000억원)	△11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21억원)	제2종 특정물질 (HFC 가스) 요율 인하 (0.00074→0.0005%)	△6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53억원)	폐지	△53	
농지보전부담금 (13,773억원)	非 농업진흥지역 부과율 인하 (개별공시지가 30→20%)	△3,540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뒷받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286억원)	면제대상 확대 등 (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155	
장애인고용부담금 (8,437억원)	연계고용 감면 한도 상향 (납부액의 60→90%), 표준사업장 규제 완화 (지주회사 계열사, 의료업 등)	△529	기타 정책목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업 부담 완화
폐기물부담금(2,003억원)	부과대상에서 검 제외	△31	
방제부담금(293억원)	부과요율 인하 (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31	

주: 연간 환산은 2024년 징수계획을 기준으로 정비에 따른 경감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
 자료: 관계부처 합동,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2024. 3. 27.



- 기타 여건 변화, 실효성 미흡 등: 13개 부담금
 -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인한 정책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

기타 여건 변화, 실효성 미흡 등 부문 부담금 정비 내용

(단위: 억원)

부담금명('24년 계획)	경감액 (연간 환산)	폐지 사유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153억원)	△153	당초 부담금 부과목적 달성
수질개선부담금(158억원)	△63	지하수이용부담금과 부과목적·사용용도가 유사 * 지자체 수입분(60%)은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2,400억원)	-	부담금 성격 미부합 * 민간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징수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29억원)	△29	부담금 성격 미부합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가 부담금(-)	-	
도로법 원인가부담금(20백만원)	△0.2	부과실적 미흡, 부과 실효성 낮음
시설부담금(산업단지)(89백만원)	△0.9	
시설부담금(물류단지)(-)	-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44백만원)	△0.4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7백만원)	△0.1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부과실적 없음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	-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주: 연간 환산은 2024년 징수계획을 기준으로 정비에 따른 경감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
 자료: 관계부처 합동,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2024. 3. 27.

부담금 정비에 따른 검토 사항

- 연간 2.0조원 부담금 감소에 따라 기금·특별회계 등의 자원 부족 우려가 있으며, 해당 회계 등의 사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원 확보 대책 등을 병행할 필요
- 환경 부문 부담금 정비(폐기물처분부담금 대상 축소,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 필요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진달래 예산분석관(02-6788-4663)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2024.6.17.)

-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급락함에 따라 경제·사회·안보 등의 분야에서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저출생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적 대책 마련이 필요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에서 2023년 0.72명으로 급락하였으며,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 현재의 저출생 상황 지속 시 산업인력 부족,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급증 등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 지역소멸 등 국가위기에 직면할 우려
- (기존 정책대응 평가)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일자리·수도권 집중 등)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접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 부족과 평가 미흡 등이 기존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한계로 지적됨
 - 정부 예산 중 저출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은 2023년 기준 23.5조원(GDP 대비 1.05%)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향후에는 직접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을 중점 관리할 예정
 - * 정부가 2023년 수립한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따른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은 47조원(GDP 대비 2.1%)이나, 저출생 대응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재분류
 - 저출생 대응 사업을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어 유사 사업, 사각지대 등이 존재하며, 기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미흡
-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총괄하는 부처를 신설하는 등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①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②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 완결, ③ 주거 부담 완화 및 결혼·출산 지원 확대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주요 내용

- (부처 신설 등)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며, 인구정책 관련 예산의 사전심의, 정책평가·환류 등 권한을 부여¹⁾
 - 신설 부처는 각 부처의 저출생 관련 예산의 사전심의·배분·조정,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등을 수행하며,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으로 변경
 -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²⁾이 2024년 7월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³⁾
 - 향후 (가칭)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추가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범위에 저출생 대응 사업 추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지원
- (핵심 분야 1: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기업 규모, 소득 수준, 성별에 관계없이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사용하고,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지원
 -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등
- (핵심 분야 2: 국가 책임 교육·돌봄체계 완결) 0세~11세까지 방학, 휴일 등 틈새 없이 국가가 교육·돌봄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돌봄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 아동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개편, 0~5세 무상교육·돌봄 실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 초등학교 늘봄학교 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등
- (핵심 분야 3: 주거 부담 완화 및 결혼·출산 지원 확대) 결혼·출산 시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혜택 등 결혼·출산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정책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분양주택 우선공급 확대 및 청약 요건 완화,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난임부부 지원 확대
 - 세액공제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2024.7.25.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됨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 공제, 자녀세액공제 확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 금액 확대(첫째 15→25만원, 둘째 20→30만원, 셋째 30→40만원)

1)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이후 「정부조직 개편방안」(관계부처 합동, 2024.7.1.)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며, 해당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음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0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24.7.11.)

3) 해당 법률안 이외에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되어 있음
: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김성원의원안, 의안번호 2200388), 인구위기대응부 신설(백혜련의원안, 의안번호 2200623),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신설(서삼석의원안, 의안번호 2201066),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및 여성가족부폐지(박성민의원안, 2201398), 인구전략부 신설(한병도의원안, 의안번호 2202877)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분야별 주요내용

분야	주요 과제	과제 내용
핵심분야 1: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단기육아휴직제도 도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일→20일) 확대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 상한 인상 : (현행)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개선) 초기 3개월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원 상한), 이후 3개월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 상한), 이후 6개월 통상임금의 80%(월 160만원 상한)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에도 지원금 지원 : (현행)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에만 지원금 지원→ (개선)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금 지원 대체인력활용 지원금 상한 인상: (현행) 월 80만원→ (개선) 월 120만원
핵심분야 2: 국가 책임 교육·돌봄 체계 완결	통합돌봄 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부처에 산재된 교육·보육·돌봄 관리체계를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등), 교육부(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여러 부처에 교육·보육·돌봄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산재 -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확대에 맞춰 단계적으로 거버넌스 통합·개편 추진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기본운영시간 8시간+돌봄시간 4시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3~5세반 기준 1:12→1:8)
	늘봄학교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까지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늘봄학교 실시 : 2024년 1학년→2025년 1,2학년→2026년 전학년 단계적으로 프로그램 무상 운영 확대 : 2025년 1,2학년 희망자 등→2026년 3학년→2027년 전학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정부지원비율 상향 :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 (개선) 중위소득 200% 이하 정부지원비율 상향 : (현행)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0~5세 아동 기준 20%→ (개선) 30%
핵심분야 3: 주거 부담 완화 및 결혼·출산 지원 확대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정책 대출 소득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현행) 7억 5천만원 이하→ (개선) 1억원 이하 출산가구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현행) 1억 3천만원 이하→ (개선) 2억원 이하,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는 2억 5천만원 이하
	결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확대(20%→35%),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신설 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전체 물량의 최대 70% 공급
	출산가구 청약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 추가 청약 1회 허용(기존 특별공급 당첨이력 배제)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소득기준(추첨제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200%) 신설
	결혼 특별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특별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한 해에 50만원 공제 자녀 세액공제 확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 금액 확대(첫째 15→25만원, 둘째 20→30만원, 셋째 30→40만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난임휴가 확대(3일→6일) 등 	

자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추진시 고려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 향후 소요 재원에 대한 면밀한 추계 및 다각적인 자원 조달방안 마련 필요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추진에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재배분 필요
 - * 정부는 2024년 5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추진실적 등을 심층 평가할 예정
 -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의 추계 및 자원 조달 방식 등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소요 재원에 대한 면밀한 추계 및 다각적인 자원 조달방안 마련 필요
- 저출산 대응 총괄을 위해 신설 예정인 '인구전략기획부'의 예산·조직규모,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권한의 범위 및 부처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구체화 필요
 -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될 경우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의 인건비, 예산사업 등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나, 현재 시점에서 인구전략기획부의 예산·조직 규모,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에 관한 인구전략기획부의 권한의 범위·부처 간 역할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이후 각 부처 예산사업의 조정·변화 등에 대한 평가가 어려움
 - *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가칭)인구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관련 법률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며, 2024년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⁴⁾

4) 2024.8.29. 윤석열대통령 국정브리핑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관계부처 합동,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2024. 8. 8.)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2024.8.8.)
 - (추진 배경) 최근 서울·수도권 아파트 및 지방, 비아파트 간 수요 및 공급의 양극화 발생
 - (주택시장)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상승세가 확대되는 반면, 비아파트 및 지방의 주택 매매시장은 침체되는 차별화 양상
 - (주택공급) 주택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공급이 급감하여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공급 불균형 발생
 - (추진 방향)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등을 통하여 우량주택 공급 확대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 내용

-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 기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 서울 및 인근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2만호 이상 추가 확보
 - 기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추진
 -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착공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여 조기 착공 유도
 -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의 선분양 허용)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한 필지 중 2024년 7월 기준 분청약 실시 전인 필지에 대하여 선분양 허용을 통한 조기 분양 유도
-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가칭)「재건축·재개발촉진법」 제정 및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추진 가속화
 - (절차 간소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 허용 및 일괄 인가,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완화 등



- (세제·금융 지원 강화)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연 10~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 재건축 사업자 및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진 등
- (규제 완화) 최대 용적률 추가 허용, 임대주택 비율의 차등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건축물 높이제한 및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재건축부담금 폐지 추진 등
- (노후계획도시 정비)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및 정비계획 신속 수립 등 순차 정비, 2029년까지 인허가 8.8만호, 착공 4.6만호 추진
 -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8월부터 공개
 -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 추진
 - 2024.11월에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통하여 2027년 첫 착공 추진
 -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정비 지원
-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규모 확대 및 '신축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 시행
 - 취득세 증과배제 범위 확대, 신축매입임대 PF 특약보증 가입 시 저리 대출 지원, 정부지원단가 현실화 추진
 -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까지 공공 신축매입주택 무제한 매입하여 공급
 -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신규 도입) 일정 기간(6년+2~4년) 거주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을 신규 도입하여 5만호 이상 공급
 - (비아파트 시장기반 정상화) 비아파트 시장의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임대수요 정상화를 위해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청약시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 확대, 안심임대인 확인서 부여 및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주택보유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등
 -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기반시설 또는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 (비아파트 공공임대 추가 공급) HUG 든든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아파트 전세임대 확대 공급
 - (HUG 든든전세주택2)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임대하는 유형 신설

- 주택공급 여건 개선
 - PF 보증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완화 및 소규모 정비사업 용도지역 상향 등 공급 규제 완화
 - (PF 보증 확대) 현재 HUG 17조원, 주금공 13조원 → HUG 20조원, 주금공 15조원
 - (면적 제한 완화) 중소형평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위해 면적 제한 완화(60 → 85㎡ 이하)
 - (용도 상향) 노후·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 허용
 - 지방 주택건설사업 정상화를 위한 CR리츠 도입 및 지방 미분양 PF 보증 확대
 - (CR리츠 도입) 시행·시공사 및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미분양 CR리츠 9월 중 출시
 - (미분양 보증 확대) 지방 미분양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하여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전용면적 구분 없이 최대 70% 지원)
-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 및 불공정행위 차단
 -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실시(수도권 주택거래, 서울 그린벨트 및 인접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 실시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기대효과

구 분	내 용
양질의 우량주택 21만호 추가 공급	- 서울 및 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 신규 발굴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활용을 통한 2만호 추가 확대
기추진 중 사업들의 기간 단축을 통해 21.7만호 조기공급	- 수도권 중심으로 신축매입주택 11만호 공급,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까지 무제한 신축매입 공급
	-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강화를 통해 서울 정비구역에서 2029년까지 13만호 조기 착공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및 용적률 상향 등 지원을 통해 2029년까지 4.6만호 조기 착공
	- 민간 분양 공공택지에 대한 LH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을 통하여 2025년까지 3.6만호 조기 착공 유도
	- 후분양을 조건으로 민간에 분양된 공공택지에 대해 선분양 전환 허용을 통해 2024년 내 0.5만호 조기 분양 유도

자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4.8.8.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 발표(2024.8.26.)

-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8월 26일 제1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를 보고
 - 2025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2024년(26.5조원) 대비 3.2조원(11.8%) 증가한 29.7조원 규모이며,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안 비중은 2024년 4.0%에서 2025년 4.4%로 0.4%p 증가
 - 2023년 예산(31.1조원) 대비로는 1.4조원(△4.5%) 적은 규모이며,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0.5%p 낮은 수준
 - 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대학 재정지원 성격의 사업 등을 비R&D로 재분류하였으며, 해당 기준 적용 시 2023년 R&D 분야 예산은 29.3조원 수준

2025년도 정부 R&D 예산안 편성 결과

(단위: 조원, %, %p)

구분	2023년 예산 (A)	2024년 예산 (B)	2025년 예산안 (C)	2024년 대비 증감		2023년 대비 증감	
				C-B	(C-B)/B	C-A	(C-A)/A
R&D(a)	31.1	26.5	29.7	3.2	11.8	△1.4	△4.5
정부 총지출(b)	638.7	656.6	677.4	20.8	3.2	38.7	6.1
비중(a/b)	4.9	4.0	4.4	0.4	-	△0.5	-

자료: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대상인 “주요 R&D”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5%(3.0조원) 증가한 24.9조원이며, “일반 R&D” 예산안은 전년 대비 3.8%(0.2조원) 증가한 4.8조원 규모¹⁾
 - 앞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24년 6월 27일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주요R&D 예산을 전년 대비 2.9조원 증액한 24.8조원 규모로 심의·의결한 바 있음

1) 정부 R&D 사업은 「과학기술기법법」 제12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는 “주요R&D” 사업과 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하는 “일반R&D” 사업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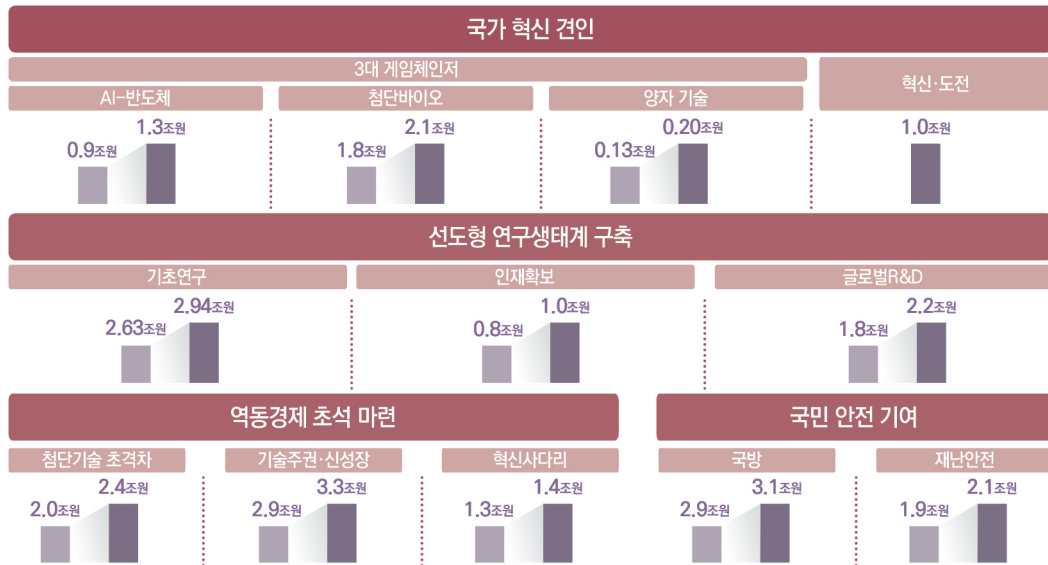
2025년도 정부 R&D 예산안 편성 결과

(단위: 조원, %)

구분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		증감	
			자문회의안	정부안(B)	B-A	(B-A)/A
R&D	31.1	26.5	-	29.7	3.2	11.8
주요R&D	25.0	21.9	24.8	24.9	3.0	13.5
일반R&D	6.1	4.6	-	4.8	0.2	3.8

자료: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도 정부 R&D 중점 투자 분야 주요내용



- 정부는 2025년 R&D사업의 중점 투자 분야로 ① 국가 혁신 건인, ② 선도형 연구생태계 구축, ③ 역동경제의 초석 마련, ④ 국민 안전 기여의 4개 과제를 제시하고 해당 분야의 예산안을 확대

① (국가 혁신 건인)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28.0% 늘어난 3.5조원 규모로 투자하고, 혁신·도전적 R&D 안착을 도모할 계획

- 【AI-반도체】 기존 생성형 AI 한계를 뛰어넘는 미개척 첨단AI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차세대 생태계(NPU2) 등 선점 기술과 범용 인공지능(AGI3) 기술개발 등을 집중 지원

2) NPU(Neural Processing Units)는 신경망처리장치로, 인간 두뇌를 모방한 AI반도체를 의미

3)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범용인공지능으로, 컴퓨터로 사람과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특정 작업에 특화된 인공지능과는 구별됨



- **【첨단바이오】** 부처간 협력(Bio 원팀)을 기반으로 첨단재생의료, 데이터·AI 융합, 합성생물학,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을 중점 투자할 예정
 - **【양자】** 글로벌 협력기반을 공고화하고, 국내 양자 생태계의 내실화를 지원하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대형 사업 착수를 지원
 - **【혁신·도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설치된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14개 신규 대표 프로젝트에 1조원 투자
- ② (선도형 연구생태계 구축) 기초연구 투자를 전년 대비 11.6% 증가한 2.94조원으로 확대하고, 학생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R&D 지원체계를 개선할 계획
- **【기초연구】** 창의형·도약형·전략형·개척형 등 기초연구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국가아젠다 및 지역현안에 특성화된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
 - **【인재 지원】** 한국형 Stipend(연구생활장려금, 2025년 600억원) 등을 통해 학생연구원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전략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
 - **【글로벌 R&D】** 해외연구자 직접참여 허용 등 글로벌 R&D 추진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선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에 2.2조원(전년대비 17.1% 증가) 지원
- ③ (역동경제 초석 마련) 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통신 등 초격차 첨단기술 분야와 우주·에너지 등 기술주권·신성장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기반 선도·유망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지원할 계획
- **【초격차 첨단기술】** 전고체·리튬메탈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첨단패키징·화합물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유망분야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6G 등 차세대통신 기술에 2.4조원 투입
 - **【기술주권·신성장】** 재사용발사체 개발,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민간주도 우주산업 기반을 본격 지원하고, SMR⁴⁾ 등 차세대 원자로 및 청정수소 분야 기술개발 적극 지원
 - **【기업R&D】** 선도·유망기업의 기술 스케일업과 기술창업, R&D 이후 지속 성장을 위한 투·융자 등 다양한 방식의 전략적 활용 연계 지원
- ④ (국민 안전 기여)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에 접목하는 등 국방의 첨단전력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범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신종범죄와 빈번·대형화되는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확보를 지원할 계획
- **【국방】** 미사일 방어 등 한국형 3축체계 개발 및 방산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에 적극 지원하고, AI·신소재 등 민간 R&D 성과를 국방분야에 접목하는 등 민군 협력에 중점 투자
 - **【재난안전R&D】** 마약범죄·딥페이크·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R&D를 지원하고, 지진·화재·홍수·산업안전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예산분석과 이미지선 예산분석관(02-6788-4628)

4) SMR(small modular reactor)는 출력이 300MW 이하의 출력을 내는 소형 원자로를 의미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 결과

시·도교육청 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해 운영

- 각 시·도에 설치된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매 회계연도마다 시·도의회 의결로 예산 확정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으로 구성
- 시·도교육청의 기금은 시·도교육감이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다른 법률,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
 - 기금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조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미래 재정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 99조 5,988억원 중 90조 9,653억원이 집행되고 5조 3,221억원이 이월되고 3조 3,114억원이 불용되었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1.3%로 전년대비 1.8%p 하락하였으며, 이월액 및 불용액은 증가
 - 2023년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에서 이월액(4조 3,154억원)과 불용액(7,061억원)이 크게 발생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 2019 ~ 2023년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9	820,811	48,858	869,669	804,011	47,598	18,059	92.5
2020	773,326	47,598	820,925	777,055	27,244	16,626	94.7
2021	849,200	27,244	876,444	838,102	24,501	13,841	95.6
2022	1,072,473	24,501	1,096,974	1,021,902	45,903	29,168	93.2
2023	950,084	45,903	995,988	909,653	53,221	33,114	91.3

자료: 교육부



- 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집행률은 81.8%(서울) ~ 97.5%(대전)로 편차가 있음
 -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의 집행률도 47.7%(서울) ~ 88.3%(대전) 범위에 분포하여 전체 세출 집행률보다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2023년도 교육청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세출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서울	137,859	143,880	117,665	81.8	13,999	19,026	9,072	47.7
부산	55,891	57,247	51,381	89.8	8,001	9,217	5,415	58.8
대구	41,197	42,373	40,640	95.9	4,624	5,633	4,410	78.3
인천	51,446	53,477	51,322	96.0	5,600	7,016	5,588	79.6
광주	28,596	29,491	28,404	96.3	3,538	4,345	3,640	83.8
대전	28,731	29,058	28,324	97.5	4,679	4,996	4,411	88.3
울산	21,907	22,223	21,380	96.2	2,681	2,921	2,221	76.0
세종	10,794	11,099	10,624	95.7	976	1,144	807	70.5
경기	213,786	232,845	209,304	89.9	26,715	38,891	24,988	64.3
강원	38,678	39,135	37,723	96.4	4,928	5,213	4,406	84.5
충북	34,702	35,108	34,027	96.9	4,314	4,660	3,965	85.1
충남	50,114	51,892	49,652	95.7	7,673	9,146	7,331	80.2
전북	44,472	46,177	43,619	94.5	5,529	6,699	4,971	74.2
전남	48,835	50,055	46,557	93.0	7,144	8,271	5,921	71.6
경북	58,262	63,672	56,036	88.0	9,845	14,365	8,324	57.9
경남	69,436	71,635	67,563	94.3	9,759	11,575	8,300	71.7
제주	15,379	16,622	15,431	92.8	1,664	2,612	1,743	66.7
계	950,084	995,988	909,653	91.3	121,669	155,728	105,514	67.8

자료: 교육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 2023년말 기준 시·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총 54개 기금을 기금회계로 운영
 - 54개 기금의 누적조성액은 22조 6,110억원, 조성액을 사용한 이후 2023년말 현재액은 총 18조 9,675억원 규모로, 2023년말 현재 조성액 중 사용되지 않은 적립액 비율은 82.7% 수준

시·도교육청 기금 수 및 조성액 규모 : 2016 ~ 2023년

(단위: 개, 억원, %)

구 분	기금수	누적조성액(A)	사용후 현재액(B)	미집행 적립금 비율(B/A)
2016	9	2,419	2,179	90.1
2017	9	3,566	3,207	89.9
2018	10	4,669	4,338	92.9
2019	20	17,981	17,157	95.4
2020	32	29,761	28,948	97.3
2021	46	61,677	54,041	87.6
2022	55	221,672	213,811	96.5
2023	54	226,110	186,975	82.7

자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

- 시·도교육청은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에 대응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의 조성액을 사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3년 조성액 증가는 2,000억원 수준에 그친 반면, 사용액은 2조 1,856억원 증가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023년 조성액은 2,289억원 증가한 반면 사용액은 9,112억원 증가
 - 2023년에는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세수재추계를 통해 10.4조원 규모의 교부금을 미배정한 후 불용처리하였음

시·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황 : 2021 ~ 2023년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누적 조성액	연중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누적 조성액	연중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누적 조성액	연중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서울	0	0	0	4,651	0	4,651	6,657	0	6,657
부산	4,742	2,300	2,442	9,189	0	9,189	9,438	1,800	7,638
대구	850	0	850	4,903	0	4,903	5,045	300	4,745
인천	4,561	1,010	3,551	10,552	2,295	8,256	8,512	2,350	6,162
광주	457	0	457	4,461	0	4,461	4,599	0	4,599
대전	1,389	485	905	5,482	0	5,482	5,624	700	4,924
울산	754	375	379	1,534	0	1,534	1,601	0	1,601
세종	2,356	500	1,856	4,476	0	4,476	4,610	280	4,330
경기	1,677	0	1,677	17,584	0	17,584	18,151	6,449	11,702
강원	5,193	0	5,193	10,307	0	10,307	11,868	0	11,868
충북	3,575	969	2,606	9,129	700	8,429	8,674	0	8,674
충남	2,070	0	2,070	9,987	0	9,987	10,289	4,950	5,339
전북	1,876	0	1,876	7,902	0	7,902	8,125	2,460	5,665



구 분	2021			2022			2023		
	누적 조성액	연중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누적 조성액	연중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누적 조성액	연중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전남	0	0	0	4,228	0	4,228	4,365	2,950	1,415
경북	3,223	1,135	2,088	4,415	1,044	3,371	3,477	0	3,477
경남	4,172	0	4,172	11,314	680	10,634	11,071	4,276	6,795
제주	0	0	0	450	0	450	465	60	405
합계	36,894	6,774	30,121	120,564	4,719	115,845	122,569	26,575	95,994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현황 : 2021 ~ 2023년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누적 조성액	연중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누적 조성액	연중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누적 조성액	연중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서울	3,184	0	3,184	12,898	803	12,095	12,513	2,352	10,161
부산	2,250	0	2,250	4,856	0	4,856	4,942	0	4,942
대구	2,000	0	2,000	7,003	0	7,003	7,252	1,100	6,152
인천	1,389	0	1,389	5,649	1,105	4,544	4,556	955	3,601
광주	250	0	250	2,019	0	2,019	2,098	816	1,282
대전	620	0	620	2,028	0	2,028	2,060	1,040	1,020
울산	636	0	636	3,018	0	3,018	3,154	321	2,832
세종	411	0	411	504	0	504	522	0	522
경기	0	0	0	11,478	0	11,478	11,910	0	11,910
강원	0	0	0	4,875	0	4,875	5,633	0	5,633
충북	0	0	0	3,350	0	3,350	3,452	560	2,892
충남	0	0	0	0	0	0	1,590	0	1,590
전북	1,901	0	1,901	5,597	0	5,597	5,721	0	5,721
전남	1,240	0	1,240	8,709	0	8,709	8,744	364	8,380
경북	3,191	0	3,191	8,501	0	8,501	8,841	3,939	4,902
경남	259	0	259	7,482	259	7,223	7,353	0	7,353
제주	1,389	207	1,182	2,441	168	2,273	2,358	0	2,358
합계	18,721	207	18,514	90,409	2,335	88,074	92,698	11,447	81,251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집행관리 강화 필요

- 시설비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이월액·불용액 규모 및 비율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교육청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강화 필요
- 최근 확대된 시·도교육청 기금 규모를 고려하여 기금 적립·사용, 적립금 운용 등에 대한 관리 필요

사회예산분석과 김성은 예산분석관(02-6788-4635)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발표(2024. 6. 19.)

- 기획재정부는 2024년 6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매년도 경영실적 평가 실시
 -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로 총 87개 기관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감사 직무 수행실적 평가로 실시되며, 기관 경영실적 평가 대상은 87개 기관, 그 중 59개 기관은 감사평가 대상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 8. 18. 발표)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이 상향되면서 평가 대상 공공기관이 '22년도 130개에서 '23년도 87개로 43개 감소¹⁾
-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기본적으로는 종전의 평가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당겨집행 실적을 재무성과 평가에 고려하는 등 정부 정책 이행 여부 고려
 - 주요사업 계량성과 평가 시 목표부여(편차)²⁾방식의 비중 확대
 - 공기업: 40→68%, 준정부기관 42→59%
 - 당겨집행 투자액³⁾을 부채에서 차감 평가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7.4. 발표)에 따라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 당겨집행 실적을 공공기관 재무성과 평가에 고려
 - 2022년도 평가에서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공기업이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으나, 당겨집행 등 정부 정책 이행 및 주요사업 성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에너지공기업이 2023년에는 우수(A) 등급을 받음

1)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 8. 18. 발표)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상향

2) 계량지표 평가방법 중 목표부여(편차) 방법은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고·최저목표는 5년간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하며, 주요사업의 상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하향 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적용

3) 당겨집행 투자액은 경제 활성화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기간 내에 조기 집행하는 예산을 의미함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기관평가 결과)는 탁월(S) 없음, 우수(A) 19개 (17.2%), 양호(B) 30개(34.5%), 보통(C) 29개(33.3%), 미흡(D) 11개(12.6%), 아주미흡(D) 2개 (3.3%)
 - 우수(A) 이상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⁴⁾
 -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는 우수(A) 6개, 양호(B) 31개, 보통(C) 20개, 미흡(D) 2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관평가) 결과

(단위: 개)

등급	공기업(32개)		준정부기관(35개)	
	기관명	개수	기관명	개수
탁월(S)	-		-	
우수(A)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6	국립공원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환경공단	9
양호(B)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해양환경공단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생태원,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
보통(C)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에스알, 한국관광광업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주)	11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8
미흡(D)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4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
아주미흡(E)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한국고용정보원	1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보도자료

4) 2022년 대비 2023년도는 평가 대상기관이 감소(△43개)함에 따라 등급 분포 변화 수준의 파악이 어려움

●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경영실적 미흡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기관장 해임건의 및 경고 등이 있음
 - 평가 결과가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 중 2023년 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이상 기관장 1명(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 8월 5일 기관장 해임조치
 - 미흡(D) 등급 11개 기관 중 2023년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 기관장 6명에 대해 경고조치

경영실적 미흡에 따른 후속조치

(단위: 개)

후속조치 사항	경영실적 미흡		후속조치 대상기관
	등급	경영실적 미흡 기관	
기관장 해임건의	아주미흡(E)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2)	한국고용정보원(1)
	2년 연속 미흡(D)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3)	
기관장 경고	미흡(D)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11)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6)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당기순손실 발생 공기업에 대해 기관장 등에 대한 성과급 삭감 등 추가조치가 있음
 - 재무위험기관(14개) 중 2023년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100% 삭감
 - 2023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적자 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의 당기순손실과 관련된 발전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50% 삭감⁵⁾

당기순손실 발생 공기업에 대한 추가 조치

(단위: 개)

후속 조치사항	추가 조치 기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삭감(100%)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2) *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는 D등급으로 감사만 해당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삭감(50%)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7)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발전자회사 지분을 한전이 100% 소유하며, 발전자회사의 발전 전기를 한전이 100% 구매, 구매가격에 따른 손익을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분담함



-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기관장에 대한 경고조치 및 안전관련 개선계획 제출이 있음
 -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8명에 대한 경고조치 및 안전관련 개선계획 제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후속조치

(단위: 개)

후속 조치사항	사망사고 발생 기관(후속조치 대상 기관)
기관장 경고조치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8)
안전관련개선계획 제출	위 8개 기관 및 국가철도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

- 노동이사제¹⁾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 경영자 중심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투명성 강화로 기업 발전을 위해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도입·운영중인 제도
 -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는 기업 구성원의 한 축인 노동자가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임
- 2022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공기업) 및 제26조제3항(준정부기관)에 따르면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임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가 없어,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가 운영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내 노동이사제 관련 조항

구분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제외)	제25조제3항(공기업) 제26조제3항(준정부기관)
추천방식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추천대상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근로자	
이사정수 및 임원유형	1명 선출, 비상임이사	
선임절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현행 이사의 선임 절차와 동일	제28조제1항
임기	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현행 이사의 임기와 동일)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근로자이사제라고도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는 노동이사의 자격요건, 겸직 조항, 보수 등 관련 세부 지침을 명시하고 있음
 - 노동이사에 선출되면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근로자위원 혹은 고충처리위원 등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함
 - 노동이사는 이사회 출석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인정함
 - 공공기관 노동이사는 사내직원이 겸직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 등 실비가 지급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내 노동이사제 관련 조항

구분	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노동이사 자격요건	노동조합 조합원, 근로자위원, 고충처리위원 탈퇴 필요	제47조의4제2항
노동이사 겸직 조항	이사회 출석 및 업무 수행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입	제47조의10
노동이사 보수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음	제47조의11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비상임이사) 선임 현황(2024.8.26.)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노동이사를 선임한 기관은 14개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17개, 9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0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 시장형 공기업은 14개 기관 모두 노동이사 선임을 완료하였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1개 기관을 제외하고 노동이사 선임을 완료하였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노동이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준시장형 공기업), 3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 준시장형 공기업 중 한국광해광업공단만 노동이사 선임 절차 진행중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이사 선임 절차 진행중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동이사 선임 절차 진행중

공공기관 노동이사 선임 현황

(단위: 개)

기관 유형	선임 여부	기관수	공공기관
시장형 공기업	선임 완료	14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공항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선임 완료	17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전력기술(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PS(주), 한국수자원공사, 한전KDN(주), 한국마사회
	선임 절차 진행중	1	한국광해광업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선임 완료	9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선임 절차 진행중	3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선임 완료	3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송강기안전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석유관리원, 국립생태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선임 절차 진행중	13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노동이사를 선임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 상위법 개정 지연, 내규 개정 지연, 비상임이사 임기 종료 이후 선임 절차 추진, 주무부처와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노동이사 선임이 지연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절차 진행 이후 노동이사 선임 예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절차 진행 이후 노동이사 선임 예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노동이사 도입을 위해 주무부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8조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지연 중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노사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사례 등을 검토하여 도입을 위한 공단 내규 개정(안)을 마련 중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연구재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은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 이후 노동이사 선임 예정임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제반 규정 개정 완료 후 노동조합에서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중

주요 공공기관 노동이사 선임 지연 사유

기관 유형	기관명	지연 사유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	제반규정 개정 완료 후 노동조합에서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 절차 진행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	상위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절차 진행 이후 노동이사 선임 예정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24.10.30)에 맞춰 노동이사 선임 예정
	국민연금공단	상위법(국민연금법) 개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노동이사 선임 지연 등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8조 개정 지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사간 도입 협의 및 관련 내규 개정(안) 마련 중
	한국산업단지공단	노동조합 협의절차 진행중
	한국산업인력공단	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 지연으로 선임 절차 지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법·내규 개정 추진 및 노사협의 등 도입 절차 진행중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2년부터 노동이사 후보 모집 및 선거를 추진하였으나 동의율 과반수 미달(무노조기관, 근로자 동의 방식 추진)로 현재 선임 지연중
	한국장학재단	경영진(기관장) 신규 임명(23.1월) 및 노동조합 집행부 변동(신규 선출, 23.7월)을 고려하였으며, 이후 임기가 도래된 임원이 없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음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24.12.29)에 맞춰 노동이사 선임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노동이사 선임 지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2024년 6월 비상임이사 임기 종료 후 선임 절차 진행중
	국토안전관리원	노동이사 공모결과 지원자가 없어 선임 지연
	한국도로교통공단	2024년 7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노동이사 공모절차 진행 예정

자료: 각 기관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공공기관평가과 박지민 예산분석관(02-6788-3731)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주요 관련 지침 개정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및 관련 지침 현황

-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의 운영을 장려
 - 육아휴직, 출산휴가, 임신·육아기 단축 근무제,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 각 공공기관은 7개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go.kr)에 공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 및 혁신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제도도 포함
 -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 제23조(일·가정 양립 지원) 등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 제3조(육아휴직자 결원 보충) 등
- 한편,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4. 5. 10.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후, 아래와 같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개선을 검토
 - 육아휴직자 결원보충 시 초과현원 인정 기간 확대 및 별도정원을 부여
 -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
 - 그 외에 일·가정 양립 노력을 별도 경영평가 지표화, 경영공시 항목을 7 → 11개로 확대 등
- 이후 기획재정부는 2024. 6. 5. 상기한 제도개선 내용 중 일부를 고려하여,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
 -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은 ①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명시하고(지침 제23조), ② 출산축하금에 한하여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하여 지출하는 것을 허용하며,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허용(지침 제37조, 제41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① 육아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 시 초과현원 인정 기간을 3년 → 5년으로 확대하고(지침 제3조), ②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정원을 부여하는(지침 제3조의2) 방향으로 개정됨



2024. 6. 5.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주요 개정 사항

구 분	조문 내용(2024. 6. 5. 개정 사항은 밑줄 표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23조(일·가정 양립지원) ①공공기관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확대, 기관별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제 도입·운영, 가족친화인증제도, 자동육아휴직 제도,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추진, 임신·육아기 근로자 대상 특별휴가 및 난임휴직 도입·운영 , 근무지 전보 시 임신·육아 중인 직원 우선 고려, 승진 시 다자녀 양육자 우대 등의 조치 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 시 다자녀 양육자 우대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2에 따른 공무원 직급에 준하여 기관별 직제를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제37조(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 ②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동일 복리후생 항목(다만, 출산축하금은 제외)에 예산과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중복하여 지출할 수 없다. 제41조(경조사비, 기념품 등) ①공공기관은 임직원의 결혼, 사망 조의금 등 경조사비(다만, 출산 축하금은 제외)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경조사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금액 등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조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직과 정원을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로 유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입대 휴직자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고 결원 보충이 가능하며,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시에도 결원보충할 수 있다(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일부러 후임자 보충 가능).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3년(육아휴직자는 5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제3조의2(별도정원의 관리)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정원(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무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도정원의 규모, 운용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설립을 위해 사내벤처팀을 운영하는 경우 3.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설)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 고려사항 - 제도 활용 실적 미흡 기관 점검 필요

- 기획재정부는 일·가정 양립 확대의 일환으로 지침에 관련 제도를 추가로 명시하거나 경영평가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나, 일부 공공기관에는 현행 제도조차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육아휴직의 경우 2023년 전체 공공기관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은 약 24.1%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사용률(약 28.0%) 대비 3.9%p 낮은 수준이며, 2023년 임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인 153개 공공기관 중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10.0% 미만인 공공기관도 20개에 육박
 - 그 외에 현재 경영정보에 관련 내용이 공시된 임신·육아기 단축 근무제,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사용 실적을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2023년 사용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이 다수 존재

2023년 공공기관 재직자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의 남성육아휴직 사용자 비교

(단위: 명, %)

구 분	공공기관 재직자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사용자 수	23,021	17,465	5,556	126,008	90,672	35,336
사용률	100.0	75.9	24.1	100.0	72.0	28.0

2023년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 현황

구 분	기관명(해당 기관의 2023년 정원)
2023년 남성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이 10.0% 미만인 기관(20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3,930), 경상국립대학교병원(4,230), 국립중앙의료원(1,822), 노사발전재단(301) 부산대학교병원(6,703), 서울대학교병원(8,452) 서울대학교병원 부설 분당서울대학교병원(5,514) 서울대학교치과병원(672), 전남대학교병원(5,654), 전북대학교병원(3,289), 중소기업은행(13,642) 충남대학교병원(5,067), 충북대학교병원(2,674), 한국무역보험공사(80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544), 한국보육진흥원(36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7,378) 한국산업은행(3,4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1,442), 한국특허정보원(423)
2023년 임신기 단축 근무제 실적이 없는 기관(7개)	예술의전당(378), 우체국물류지원단(1,485), 코레일로지스(주)(543) 코레일테크(주)(5,267), 한국교육과정평가원(351), 한국소비자원(547), 한전MCS(주)(4,361)
2023년 육아기 단축 근무제 실적이 없는 기관(27개)	(주)공영홈쇼핑(381), 국방기술품질원(694),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442) 서울대학교치과병원(67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342), 주식회사 에스알(678) 예술의전당(378), 전북대학교병원(3,289), 정보통신산업진흥원(45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58), 코레일로지스(주)(54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314) 한국관광공사(766), 한국교육과정평가원(351), 한국농업기술진흥원(323) 한국동서발전(주)(2,52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31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384) 한국산림복지진흥원(453), 한국산업인력공단(1,876), 한국서부발전(주)(2,784) 한국수자원공사(6,364), 한국수출입은행(1,213), 한국전력거래소(536) 한국중부발전(주)(2,840), 한국지역난방공사(2,13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405)
가족돌봄휴가 사용 실적이 없는 기관(4개)	대한석탄공사(633), 예술의전당(378), 학교법인한국폴리텍대학(2,740) 한국수산자원공단(343)
가족돌봄휴직 사용 실적이 없는 기관(29개)	(주)공영홈쇼핑(381), 국립중앙의료원(1,822), 국방기술품질원(694) 노사발전재단(301),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44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300) 서민금융진흥원(339), 신용보증기금(2,907), 예술의전당(378)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392), 전남대학교병원(5,654), 주택도시보증공사(1,099) 충북대학교병원(2,674), 코레일로지스(주)(543), 한국가스안전공사(1,714) 한국광해광업공단(8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351), 한국농업기술진흥원(32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3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54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384) 한국보건산업진흥원(4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430), 한국소방산업기술원(312) 한국수산자원공단(34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626), 한국원자력환경공단(420) 한국도주주택공사(8,545), 한국해양과학기술원(741)

주: 2023년 임직원 정원(소속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이 300명 이상인 153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작성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4. 8. 31. 제출 기준)

-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활용 실적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실적이 미흡한 이유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해외재정동향

- ▶ EU 재정준칙 개정 및 초과재정적자 시정절차(EDP)의 주요 내용
-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 ▶ 일본, 2025년도 예산안 요구기준 결정

EU 재정준칙 개정 및 초과재정적자 시정절차 (EDP)의 주요 내용

EU 재정준칙 개정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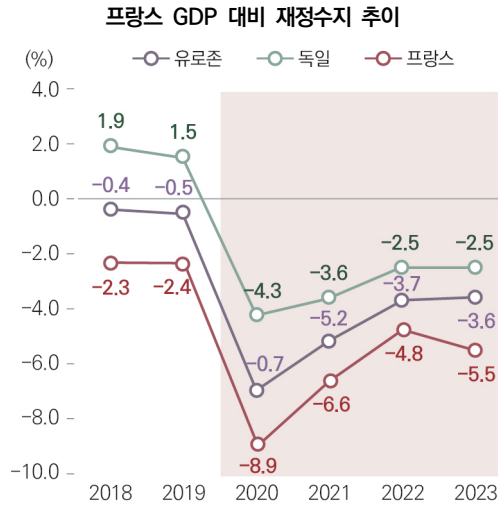
- EU가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되었던 재정준칙을 2024년부터 재가동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재정준칙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EU 재정준칙이 개정됨(2024.4.29.)
 - 코로나19 등으로 EU 회원국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경제회복세 지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등으로 기존 재정준칙의 개정 필요성 대두
 - 유로존 국가들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코로나19를 거치며 2020년 사상 최고 수준인 90%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 81.5%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 한편 EU 재정준칙에는 일반 면책 조항(general escape clause)이 있으며, 이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2023년말까지 회원국들이 재정준칙 위반에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함
- EU 재정준칙 개정은 점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동시에 성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국가 부채 비율과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
 - 새로운 EU 재정준칙에서도 회원국의 건전 재정 유지와 재정 정책 공조를 위해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기존과 같이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
 - 다만 녹색·디지털 및 국방 분야 등 전략적 영역(strategic areas)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EU 집행위원회는 과도한 적자 여부 등을 평가할 때 녹색·디지털 및 국방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 계획 및 이행, 회원국의 공공부채 상황, 경제 여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예정
 - 또한 새로운 재정준칙은 경기대응,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대응 여지를 확보하고, 기존 거시 경제적 불균형(macroeconomic imbalances)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새로운 재정준칙의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기준 및 적정수준 초과시 감소 메커니즘
 - 일반정부부채가 GDP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연평균(minimum annual average) 1%p씩, GDP의 60%와 90% 사이인 경우에는 최소 0.5%p씩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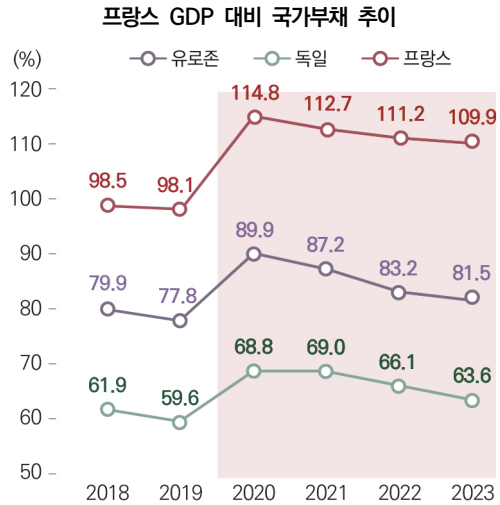
초과재정적자 시정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의 주요 내용

- 초과재정적자 시정절차(EDP)는 EU 회원국의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가 기준을 상회한 경우 조정절차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지출 등과 관련된 시정절차를 제안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의미
 - 새로운 EU 재정준칙은 회원국의 국가부채 조정 등과 관련된 최소 4년에 걸친 중기재정구조계획(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을 제출
 - 새로운 EU 재정준칙은 회원국들의 재정여건 개선 상황 및 투자 확약에 따라 재정조정 경로 기한을 7년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국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
 -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는 회원국의 재정적자 또는 국가부채 기준 준수 여부 및 이에 따른 초과재정적자 시정절차(EDP) 개시 여부 등을 판단
 - 이에 대한 판단시 녹색, 국방 분야 등 전략적 투자 및 지출, 중기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를 진행
 - 한편 규정 위반시 벌금은 GDP의 최대 0.05%이며, 관련 회원국의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6개월마다 누적

- 실제 EU 집행위원회는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에 대한 기준을 상회한 프랑스 등에 대해 새로운 재정준칙에 따른 초과재정적자 시정절차(EDP) 개시를 EU 이사회에 제안한 상황
 - 2023년 프랑스 재정적자는 GDP 대비 5.5%로 재정준칙(3%)을 상회한 가운데, 2027년까지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고 일반정부 부채도 2023년 110%에서 2027년 112%로 증가할 전망
 -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뿐 아니라 재정준칙을 위반한 이탈리아, 벨기에, 헝가리, 몰타, 슬로바키아 7개국을 대상으로 개정된 EU 재정준칙에 따라 재정적자 시정절차 개시를 제안



자료: eurostat



자료: eurostat

시사점

-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지속가능한 성장과 전략적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개정
 - 재정조정(fiscal adjustment)이 대부분 투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녹색·디지털 및 국방 분야 사업 투자로 인한 지출 확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안 이행 기간이 예외적으로 7년까지 연장 가능
 - EU 집행위에서 제안한 새로운 EU 재정준칙 원칙은 개혁 및 투자활성화, 국가의 재량권 (ownership) 강화, 간소화(simplicity) 등
-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성장잠재력, 전략적 투자 등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분야에 대한 지출을 보호하기 위한 준칙의 유연성을 고려할 필요
 -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에너지를 위한 투자, 지정학적 리스크, 인구 통계적 변화 측면 등에 대한 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IMF는 2024년 7월 16일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WEO Update) 발표

- IMF는 세계 경제가 2024년에는 3.2%(‘24.4. 전망 유지), 2025년에는 3.3%(‘24.4. 대비 0.1%p 상향)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아시아 지역의 수출 호조 등 세계 무역 회복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4년 성장률을 지난 4월과 동일한 3.2%로 유지
 - 2025년 성장률을 지난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3%로 전망
 - ※ IMF는 매년 4월·10월에 세계경제전망(WEO), 1월·7월에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을 발표
-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24년 2.5%(‘24.4. 대비 0.2%p 상향), 2025년 2.2%(‘24.4. 대비 0.1%p 하향)로 전망
 - 정부,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와 유사하고,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
 - ※ 주요기관의 '24년 성장 전망(%) : (정부) 2.6 (한은) 2.5 (OECD) 2.6 (KDI) 2.6

국가 그룹·부문별 전망

- (선진국 성장률)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한 반면, 유로존은 경제활동이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24년, 2025년 성장률을 2024년 4월과 동일한 1.7%, 1.8%로 전망
 - 미국은 소비 둔화와 노동 시장 부진으로 성장률 하향, 일본은 공급 차질과 민간 투자 감소로 성장률 하향, 유로존은 서비스 활동이 개선됨에 따라 성장률 상향
- (신흥개도국 성장률) 중국과 인도의 경제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2024년 성장률을 4.3%(‘24.4. 대비 0.1%p 상향)로 전망한 가운데, 2025년은 4.3%(‘24.4. 대비 0.1%p 상향)로 전망
 - 중국은 민간 소비 회복과 1분기 수출 증가로 성장률 상향, 인도는 개인 소비에 대한 전망 개선으로 성장률 상향, 브라질은 홍수 피해의 단기적 영향을 반영하여 성장률 하향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경제성장률	2023년	2024년			2025년		
		'24.4. 전망(A)	'24.7. 전망(B)	조정폭 (B-A)	'24.4. 전망(A)	'24.7. 전망(B)	조정폭 (B-A)
세계	3.3	3.2	3.2	0.0	3.2	3.3	+0.1
선진국	1.7	1.7	1.7	0.0	1.8	1.8	0.0
-미국	2.5	2.7	2.6	△0.1	1.9	1.9	0.0
-유로존	0.5	0.8	0.9	+0.1	1.5	1.5	0.0
독일	△0.2	0.2	0.2	0.0	1.3	1.3	0.0
프랑스	1.1	0.7	0.9	+0.2	1.4	1.3	△0.1
이탈리아	0.9	0.7	0.7	0.0	0.7	0.9	+0.2
스페인	2.5	1.9	2.4	+0.5	2.1	2.1	0.0
-일본	1.9	0.9	0.7	△0.2	1.0	1.0	0.0
-영국	0.1	0.5	0.7	+0.2	1.5	1.5	0.0
-캐나다	1.2	1.2	1.3	+0.1	2.3	2.4	+0.1
-한국	1.4	2.3	2.5	+0.2	2.3	2.2	△0.1
신흥개도국	4.4	4.2	4.3	+0.1	4.2	4.3	+0.1
-중국	5.2	4.6	5.0	+0.4	4.1	4.5	+0.4
-인도	8.2	6.8	7.0	+0.2	6.5	6.5	0.0
-러시아	3.6	3.2	3.2	0.0	1.8	1.5	△0.3
-브라질	2.9	2.2	2.1	△0.1	2.1	2.4	+0.3
-멕시코	3.2	2.4	2.2	△0.2	1.4	1.6	+0.2
-남아공	0.7	0.9	0.9	0.0	1.2	1.2	0.0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The Global Economy in a Sticky Spot), 2024.7.

- (무역 전망) 세계 교역 신장률은 2023년 정체 상태에서 2024~2025년 연평균 약 3.25%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경제 성장률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 국경 간 무역 제한의 증가로 지정학적으로 먼 경제블록 간의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세계 GDP 대비 교역 비율은 예상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
- (인플레이션 전망)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와 상품 가격 상승으로 2024년과 2025년에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노동 시장의 점진적인 둔화와 에너지 가격의 하락 예상으로 인해 2024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되고, 신흥개도국의 경우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분적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 덕분에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진정될 전망
- (전망의 위험요인) 세계 성장률 전망에 대한 위험은 2024년 4월 전망과 마찬가지로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일부 단기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



- (상방요인) 다자 간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확대, 거시구조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통해 공급 증가, 생산성 및 성장을 촉진
- (하방요인) 선거로 인한 경제 정책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 재정적자와 부채의 확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무역 관세 등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산업 정책은 국경을 넘는 피해를 초래하고 보복 조치를 유발

IMF의 정책권고

-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위험이 현실화된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리 조기 인하를 자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 반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정 건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필요
- 신흥개도국의 경우 통화 및 자본 흐름 변동성 위험 관리를 위해 환율 조정을 허용하면서 통화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목표에 가깝게 유지하고 외환 보유고를 신중하게 관리하여 미래의 자본 유출에 대비할 필요
 -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여 외환시장의 취약성을 완화할 필요
- 여성과 이민자를 통합하여 노동 공급을 추가로 증가시킴으로써 인구학적 압력을 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
- 마지막으로, 자국 중심 정책으로 인한 자원배분과 무역 왜곡 조치를 지양하고, 다자 간 협력과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일본, 2025년도 예산안 요구기준 결정

일본은 각 부처의 예산안 편성의 지침이 되는 '2025년도 개산 요구기준'을 내각에서 결정(2024년 7월 29일)

- 개산(概算)¹⁾ 요구기준은 국가 예산편성에 앞서 재무성이 각 부처에 전달하는 지침이며, 우리나라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해당
 - 동 기준에 따라 각 부처 예산안 요구(~8월말) → 재무성 심사(~12월) → 예산안 국회 제출(~1월) → 예산 성립(~3월말)의 순으로 예산 과정 진행²⁾

일본의 예산 과정

구분	시기 (2024회계연도)
개산 요구기준 결정	• 전년도 7월말 (2023.7.25.)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	• 전년도 8월말 (2023.9.5.)
재무성 심사	• 전년도 12월말 (2023.12.22.)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 1월말 (2024.1.26.)
국회 예산 확정	• 3월말 (2024.3.28.)

자료: 일본 재무성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일본의 예산은 지속적인 사회보장 관련 지출 등에 따라 2017년 97.5조엔에서 2020년 처음으로 100조엔을 초과한 이후, 2024년 112.6조엔까지 증가

일본의 예산 추이

(단위: 조엔,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97.5	97.7	99.4	102.7	106.7	107.6	114.4	112.6
- 사회보장 비중	33.4	33.8	34.2	34.8	33.7	33.8	32.3	33.5

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며, 본예산 기준임

자료: 일본 재무성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일본은 예산안 대신에 개산(概算)이라는 용어를 사용. 예산의 틀(framework)을 결정하는 것을 예산의 개정(概定)이라고 하며, 예산의 틀을 구성하는 계수(計數)를 개산(概算)이라고 하고 있음

2)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임



2025년도 개산 요구기준의 주요 내용

- 개산 요구기준은 연금·의료, 국방, 지방교부세교부금, 의무적 경비, 중요정책추진들 등 주요 부문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³⁾
 - 연금·의료 관련 경비는 전년도 예산액(35.6조엔)을 기준으로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액분(0.41조엔)을 가산한 범위 내에서 요구할 것
 - 국방 관련 경비는 「일본 방위력의 발본(拔本)적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방위력 정비계획’을 감안하여 요구할 것
 -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지방특례교부금은 ‘경제·재정 신생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요구할 것
 - ※ 경제·재정 신생(新生)계획은 6년간의 중장기 경제·재정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해당
 - 의무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액(8.7조엔) 내에서 요구하되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의무적 경비를 감축한 경우에는 재량적 경비를 추가 요구 가능
 - 기타 재량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액(14.2조엔)을 기준으로 10% 이상 감축한 범위에서 요구할 것
 - 중요정책추진들은 지속적·구조적인 임금 인상, 민관 연계에 의한 투자 확대,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발본적인 강화, 방위력 강화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 중요정책추진들(重要政策推進枠)은 기존 재량적 경비를 재검토하여 성장 분야에 배분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각 부처가 재량적 경비를 10% 감축하면 그 3배까지 요구 가능

2025년도 개산 요구기준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연금·의료 관련 경비	• 전년도 예산액(35.6조엔)을 기준으로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액분(0.41조엔)을 가산한 범위 내에서 요구할 것
국방 관련 경비	• 「일본 방위력의 발본적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방위력 정비계획을 감안하여 요구할 것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지방특례교부금의 합계에 대해서는 「경제·재정 신생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요구할 것
의무적 경비	• 전년도 예산액(8.7조엔) 내에서 요구하되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의무적 경비를 감축한 경우에는 재량적 경비를 추가 요구 가능
기타 재량적 경비	• 전년도 예산액(14.2조엔)을 기준으로 10% 이상 감축한 범위에서 요구할 것
중요정책추진들	• 지속적·구조적인 임금 인상, 민관 연계에 의한 투자 확대,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발본적인 강화, 방위력 강화 등

자료: 일본 재무성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요구한도(ceiling)를 정하는 경우와 금액을 정하지 않는 경우(사향요구)가 있음

일본 정부는 기초적 재정수지의 2025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은 경제·재정 분야의 상위 계획인 '경제·재정 신생(新生)계획'에 따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초적 재정수지의 2025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초적 재정수지(基礎的財政收支, Primary Balance)는 정부채무이자 같은 금융비용을 제외한 재정 수입과 지출의 차액으로, 정책적 경비(사회보장과 공공사업, 지방교부금 및 정부의 일반경비 등)를 새로운 채무 없이 어느 정도 충당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 ※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측정시의 주요 지표로 관리재정수지(=정부 총수입 - 정부 총지출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사용하고 있음
- 일본의 기초적 재정수지는 코로나-19 절정기였던 2020년 △50.2조엔에서 적자폭이 줄어들었으나 2022년에는 △20.5조엔을 기록
 - 내각부의 「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시산(試算)(2024.6)」에 따르면, 물가 상승과 함께 작년도의 세입이 증가된 것, 세출 개혁을 지속할 경우의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2025년도에는 8,000억엔의 흑자(GDP 대비 0.1%)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일본 기초적 재정수지 실적 및 전망

(단위: 조엔,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30	2033
기초적 재정수지	△50.2	△30.4	△20.5	△17.1	△18.6	0.8	10.5	14.5
GDP대비 비중	△9.3	△5.5	△3.6	△2.9	△3.0	0.1	1.4	1.8

주: 2022년까지는 실적치, 2023년 이후는 전망치(성장이행 케이스)임
 자료: 일본 재무성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NABO Fiscal Trends & Issues

재정동향&이슈

2024년 Vol. 2 통권 제25호

발행일	2024년 9월 10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직무대리 김경호
편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 02-2672-1535

© 국회예산정책처, 2024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2-001546-08

ISSN 2734-0805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